

1. 개정이유

새마을금고 임원선거에서 허용되는 선거운동방법의 다양화, 기부행위 제한 규정 신설, 감독기관의 금고 또는 중앙회 임원에 대한 직접 제재조치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이 개정됨(법률 제19329호, 2023. 4.11. 공포, 2023.10.12. 시행)에 따라 위임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금고 임원선거 시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5조의2 및 별표 1의2 신설)
- 나. 금고 임원선거 시 금지되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의례적 축의·부의 금품(5만원 이내), 음식물(3만원 이내), 답례품·선물(1만원 이내)의 금액 범위를 정함(안 제5조의3 신설)
- 다. 감독기관의 금고·중앙회 임원에 대한 제재처분 시 먼저 해당 금고·중앙회에 제재처분에 따른 조치를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접 제재처분에 따른 조치를 하는 등 제재처분의 절차를 정함
(안 제11조의2, 별표 1)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선거운동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① 법 제22조제3항 각 호(법 제64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선거운동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법 제22조제3항제4호(법 제64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도로·시장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모이는 공개된 장소”란 도로·도로변·광장·공터·주민회관·시장·점포·공원·운동장·주차장·경로당 등 누구나 오고갈 수 있는 공개된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1. 선박·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 구내 및 지하철역 구내
2. 병원·종교시설·극장·금고 사무소 및 사업장의 안(담장이 있는 경우에는 담장의 안을 포함한다)

제5조의3(축의·부의금품 등의 금액의 범위) 법 제22조의2제3항(법 제64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통상적인 범위에

서 1명에게 제공할 수 있는 축의·부의금품, 음식물, 답례품 및 의례적인 선물의 금액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2조의2제2항제2호 나목에 따른 축의·부의금품: 5만원 이내
2. 법 제22조의2제2항제2호 다목에 따른 음식물: 3만원 이내
3. 법 제22조의2제2항제2호 다목에 따른 답례품: 1만원 이내
4. 법 제22조의2제2항제2호 라목에 따른 선물: 3만원 이내

제11조의2제1항 중 “세부기준은”을 “세부기준 및 절차는”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3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재처분의 세부기준 및 절차(제11조의2제1항 관련)

1. 제재처분 세부기준

위반행위의 유형	구분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금고나 중앙회의 정치 관여 금지 위반(법 제5조)	임원	개선~직무정지	직무정지	직무정지~견책	견책~경고
	직원	징계면직~정직	정직	정직~감봉	견책~주의
2. 임원의 선거운동 제한 위반(법 제22조)	임원	개선~직무정지	직무정지	직무정지~견책	견책~경고
	직원	징계면직~정직	정직	정직~감봉	견책~주의
3. 성실 의무 위반(법 제25조)					
가. 업무와 관련한 횡령, 배임, 절도, 금품수수 등 범죄 행위	임원	개선	개선~직무정지	직무정지~견책	견책~경고
	직원	징계면직	징계면직~정직	정직~감봉	견책~주의
나. 금고 또는 중앙회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	임원	개선~직무정지	직무정지	직무정지~견책	견책~경고
	직원	징계면직~정직	정직	정직~감봉	견책~주의
다. 업무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	임원	직무정지	직무정지~견책	견책~경고	경고
	직원	정직	정직~감봉	감봉	견책~주의
라. 감독기관 등의 감독 또는 검사 등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임원	개선~직무정지	직무정지	직무정지~견책	견책~경고
	직원	징계면직~정직	정직	정직~감봉	견책~주의
마. 직무태만 행위	임원	직무정지	직무정지~견책	견책~경고	경고

	직원	정직	정직~감봉	감봉	견책~주의
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	임원	개선~직무정직	직무정지	직무정지~견책	견책~경고
	직원	징계면직~정직	정직	정직~감봉	견책~주의
사. 겸직금지 위반 행위	임원	직무정지	직무정지~견책	견책~경고	주의
아. 내부통제기준 위반 행위(중앙회)	임원	직무정직	직무정지~견책	견책~경고	경고
	직원	정직	정직~감봉	감봉	견책~주의
4. 불공정한 거래행위 금지 위반(법 제28조의2)	임원	직무정지	직무정지~견책	견책	경고
	직원	정직	정직~감봉	감봉	견책~주의
5. 그 밖에 법,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으로 정한 절차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임원	개선~직무정직	직무정지	직무정지~견책	견책~경고
	직원	징계면직~정직	정직	정직~감봉	견책~주의

2. 제재처분 절차

- 가.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금고·중앙회의 임직원에게 대하여 제재처분을 하려는 경우 금고 또는 중앙회에 대하여 해당 제재를 조치할 것을 요구한다.
- 나. 가목에 따른 제재조치 요구를 받은 금고 또는 중앙회는 요구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회(직원에게 대한 제재조치 요구의 경우에는 이사회 등 징계의결 권한이 있는 기구를 말한다)를 개최하여 해당 제재조치를 의결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다. 금고 또는 중앙회가 나목에 따라 제재조치를 의결하지 않거나, 가목에 따른 요구와 다르게 의결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금고 또는 중앙회에 대하여 나목에 따라 해당 제재를 조치할 것을 다시 요구한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금고 또는 중앙회는 요구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요구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라. 다목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다시 요구하였음에도 금고 또는 중앙회가 해당 요구에 따라 조치하지 않은 경우 다음에 따라 관계 임원에게 대하여 직접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재대상자가 임원인 경우 해당 임원에 대하여 직접 제재조치할 수 있다.

2) 제재대상자가 직원인 경우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관계 임원에 대하여 직접 제재조치할 수 있다.

마. 다목 및 라목1)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금고 또는 중앙회에 제재조치를 다시 요구하거나 관계 임원에 대하여 직접 제재조치하는 경우 다음에 따른다.

1) 금고 또는 중앙회가 가목에 따른 요구와 다르게 의결하여 다목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재조치를 다시 요구하는 경우 이전의 제재조치 요구를 취소하고, 금고 및 중앙회는 제재조치 요구와 다르게 의결한 사항을 취소하여야 한다.

2) 라목1)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제재조치하는 경우 이전의 제재조치 요구를 취소하고, 금고 및 중앙회가 제재조치 요구와 다르게 의결한 사항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가목에 따른 제재조치 요구 없이 해당 임원에 대하여 직접 제재조치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대한 위법·부당행위를 하여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키거나 금고 또는 중앙회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한 경우

2)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금고 또는 중앙회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하여 해당 기관의 경영을 심히 위태롭게 하거나 해당 기관 또는 거래자 등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

3) 해당 임원의 퇴임일이 2개월 이내인 경우 등 요구에 따른 제재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새마을금고법」, 금융관계법령(영 제10조의2에 따른 금융관계법령을 말한다), 「형법」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7조·제8조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는 위법행위를 한 경우

사. 라목 및 바목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제재조치를 하는 경우 해당 임원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통보하면서 동시에 관련 금고 또는 중앙회에 대하여 그 사실을 통보하며, 해당 금고 또는 중앙회는 제재내용을 인사기록부에 기록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금고·중앙회의 임직원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위규 행위사실, 관련 법규, 제재처

분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제재처분 통보서로 하여야 한다.

자. 법 제8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금고·중양회의 임원에 대하여 해임 또는 직무정지를 명하는 경우 해당 임원에 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이의신청 절차

가. 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금고·중양회의 임직원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하려는 경우 그 제재처분에 관하여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제기 등 불복을 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사항을 해당 금고 또는 중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나. 제2호 가목 및 바목에 따라 제재조치 요구 또는 직접 제재조치를 받은 금고 또는 중양회와 제재대상자는 그 요구 및 조치가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 나목에 따른 이의신청은 신청의 취지, 이유 및 증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해당 요구 또는 조치일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라. 나목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심의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 사유 및 기한 등을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각하: 이의신청이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다목에 따른 증거서류 등의 불비로 신청인에게 이의 보완을 요청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2) 인용: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각: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라목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4. 중양회장의 제재조치

법 제79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중양회장이 금고 임직원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하려는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양회장”으로, “금고·중양회”는 “금고”로 본다.

[별표 1의2]

선거운동방법 세부사항(제5조의2제1항 관련)

1. 선거공보의 배부

가. 선거공보의 작성 및 제출

법 제2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선거공보의 배부를 통해 선거운동을 하려는 후보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선거공보 1종을 작성하여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3일까지 법 제23조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3조의2에 따라 임원선거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한 경우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하며, 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선거공보의 규격 및 매수

가) 크기: 길이 29.7센티미터, 너비 21센티미터 이내

나) 매수: 1매(중앙회장선거는 4매 이내). 이 경우 양면에 모두 작성할 수 있다.

다) 무게: 제곱미터당 100그램 이내

라) 색도: 제한 없음

2) 선거공보 게재사항

선거공보에는 후보자의 기호·사진·성명·학력·주요경력 및 선거공약만 게재한다. 이 경우 학력 게재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64조제1항에 따른다.

나. 제출된 선거공보의 발송

위원회는 제출된 선거공보를 확인한 후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선거인에게 발송하되, 투표안내문과 동봉하여 발송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가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3일까지 선거공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선거공보의 규격에 맞지 않는 선거공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발송하지 않는다.

1) 금고 임원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5일까지

2) 중앙회 임원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7일까지

다. 그 밖의 사항

1) 후보자는 제출한 선거공보를 정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다. 다만, 선거공보의 제출마감일까지는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음을 이유로 해당 사항을 정정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 또는 후보자에게 선거공보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검토받도록 안내할 수 있으며, 그 검토 결과 법령 또

는 정관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이유를 제시한 후 수정하여 작성·제출하게 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후보자가 제출할 0선거공보의 수량 및 제출마감시간을 선거일을 공고할 때 함께 공고해야 한다.

4) 선거공보의 작성비용은 후보자가 부담한다.

라. 임원(금고의 이사장 및 중앙회장은 제외한다)선거에 관한 특례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후보자로 하여금 사진 및 선거공보 전산원고를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3일까지 제출하게 한 후 각 후보자의 기호 순으로 선거공보를 작성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투표안내문과 동봉하여 선거인에게 발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거공보 전산원고의 제출마감시간은 선거일을 공고할 때 함께 공고하며, 선거공보의 작성비용은 금고(금고 임원선거로 한정한다) 또는 중앙회(중앙회 임원선거로 한정한다)가 부담한다.

1) 금고 임원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5일까지

2) 중앙회 임원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7일까지

2.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개최

가. 개최 일시·장소의 지정 및 공고

1) 위원회는 후보자등록마감 후 후보자와 협의하여 적당한 일시와 장소를 정한 후 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를 1회 개최한다. 다만, 후보자가 1명이거나 후보자 전원이 합의하는 경우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일시 및 장소 등을 개최일 전 2일까지 공고하고, 후보자에게 통지한다.

나.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진행 방법

1) 합동연설회에서의 연설순서는 연설당일 추첨에 따라 결정하고, 연설시간은 후보자별 10분의 범위에서 균등하게 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장은 연설순서 추첨시각까지 후보자가 참석하지 않을 때에는 그 후보자를 대리하여 연설순서를 추첨할 수 있다.

2) 공개토론회는 후보자가 사회자의 주관 하에 금고운영에 관한 소견을 발표하거나 사회자를 통하여 참석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 경우 사회자는 질문 및 답변의 횟수와 시간을 모든 후보자에게 공정하게 해야 한다.

다.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관리

- 1) 후보자가 합동연설회의 본인연설 순서시각까지 또는 공개토론회의 개시시각까지 참석하지 않을 때에는 연설 또는 토론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 2)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또는 위원회가 미리 지명한 관리자는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에서 후보자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연설이나 발언을 할 때에는 이를 제지할 수 있으며, 후보자가 이에 불응할 때에는 연설이나 발언의 중지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3)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또는 위원회가 미리 지명한 관리자는 합동연설회장 또는 공개토론회장에서 연설이나 발언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지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할 때에는 합동연설회장 또는 공개토론회장 밖으로 퇴장시킬 수 있다.

3. 전화 또는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가. 전화 또는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방법

법 제22조제3항제3호에 따라 전화 또는 컴퓨터통신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려는 후보자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날까지 다음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1) 전화를 이용해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선거운동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할 수 없다.
- 2) 문자메시지(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해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선거운동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할 수 없다.
- 3) 금고(금고의 임원선거로 한정한다) 또는 중앙회(중앙회장선거로 한정한다)가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 또는 대화방에 선거운동정보를 게시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방법
- 4) 컴퓨터통신을 이용해 전자우편 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방법

나. 전화 또는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관리

- 1) 위원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정보가 가목3)에 따른 금고 또는 중앙회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 또는 대화방에 게시된 경우

그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른다.

2) 1)에 따라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정보가 삭제된 경우 해당 정보를 게시한 후보자는 그 정보가 삭제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2)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가) 이의신청기간을 경과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각하한다.

나)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에게 1)의 요청을 철회하고, 이의신청인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다.

다)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신청을 기각하고 이의신청인에게 그 뜻을 통지한다.

4) 가목2)에 따른 문자메시지 및 같은 목 4)에 따른 전자우편 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발송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5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5조의4에 따른다.

4.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

가.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의 기간

법 제22조제3항제4호에 따라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모이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를 통해 선거운동을 하려는 후보자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날까지 해당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나. 명함 게재사항 및 규격 등

1) 명함에는 후보자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다. 이 경우 학력 게재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64조제1항에 따른다.

2) 명함의 규격은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3) 명함의 작성비용은 후보자가 부담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5조의2(선거운동방법에 관한 세</u> <u>부사항) ① 법 제22조제3항 각</u> <u>호(법 제64조의2제6항에서 준용</u> <u>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u> <u>선거운동방법에 관한 세부사항</u> <u>은 별표 1의2와 같다.</u> <u>② 법 제22조제3항제4호(법 제6</u> <u>4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u> <u>우를 포함한다)에서 “도로·시장</u> <u>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다</u> <u>수인이 왕래하거나 모이는 공개</u> <u>된 장소”란 도로·도로변·광장·</u> <u>공터·주민회관·시장·점포·공원·</u> <u>운동장·주차장·경로당 등 누구</u> <u>나 오고갈 수 있는 공개된 장소</u> <u>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u> <u>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는</u> <u>제외한다.</u> <u>1. 선박·여객자동차·열차·전동</u> <u>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u> <u>구내 및 지하철역 구내</u> <u>2. 병원·종교시설·극장·금고 사</u> <u>무소 및 사업장의 안(담장이</u> <u>있는 경우에는 담장의 안을</u>

<u><신 설></u> 제11조의2(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의 세부기준) ① 법 제74조의 2제1항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의 <u>세부기준은</u> 별표 1과 같다. ② ~ ④ (생략)	<u>포함한다)</u> 제5조의3(축의·부의금품 등의 금액의 범위) 법 제22조의2제3항 (법 제64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통상적인 범위에서 1명에게 제공할 수 있는 축의·부의금품, 음식물, 답례품 및 의례적인 선물의 금액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2조의2제2항제2호 나 목에 따른 축의·부의금품: 5만원 이내 2. 법 제22조의2제2항제2호 다 목에 따른 음식물: 3만원 이내 3. 법 제22조의2제2항제2호 다 목에 따른 답례품: 1만원 이내 4. 법 제22조의2제2항제2호 라 목에 따른 선물: 3만원 이내 제11조의2(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의 세부기준) ① ----- ----- ----- <u>세부기준 및 절차는</u> -----. ② ~ ④ (현행과 같음)
---	---